무배당 뉴스타트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약관

무배당 뉴스타트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약관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3
<<주요내용 요약서>> 5
<<보험용어 해설>> 7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8
제 2 조【특약내용의 변경】 8
제 3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8
제 4 조【특약의 보험기간】 8
제 5 조【특약의 갱신】 8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9
제 6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9
제 7 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9
제 8 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9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9
제 9 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9
제 10 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0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
제 1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0
제 13 조【해지환급금】 11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1
제 14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1
제 15 조【보험금 등의 지급】 11
제 5 관 기타사항 등 11
제 16 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1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2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12
(별표 3) 뇌출혈 분류표 13
(별표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3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부활
-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특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단, 갱신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만기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뇌출혈에서 **뇌경색(분류번호: I63)** 이나 **비파열성 뇌동맥류(분류번호: I67.1)**, **재해사고에 의한 뇌출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에서 **협심증(분류번호: I20), 만성 허혈성 심장병(분류번호: I25) 및 오래된 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5.2)과 심장중격(심장을 좌우로 나누는 근육성 막)결손(분류번호: Q) 등 선천성 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질환이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다음의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뇌출혈: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위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취소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

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뉴스타트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소멸은 제외)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2대질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조 【특약의 갱신】
①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 일전까지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이 특약이 소멸한 경우**
2. **주계약에서 정한 갱신가능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제 1 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 갱신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다만,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 6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합니다.

⑥ 갱신되는 특약은 갱신시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1. **제 2 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2. **제 3 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 6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및 제 5 조(특약의 갱신) 제 4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각각 1 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2 대질병진단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중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2대질병진단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아 2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 의하여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2대질병진단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의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5항 내지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2대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0%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중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2대질병진단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2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3) 뇌출혈 분류표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